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66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신정훈 · 김현정 · 한정애
김문수 · 조계원 · 이해식
이병진 · 박홍배 · 이정문
부승찬 · 안도걸 · 서미화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궐선거등은 해당 직의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선거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 기존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단속사무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경비의 납부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발송기한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시키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보궐선거등에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이 아닌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 나. 발송기한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시킴(안 제43조).
- 다.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와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부하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단서 신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선거등의 경우 본문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43조 중 “2일”을 “3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경비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경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는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② ~ ⑦ (생략)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

다미 드니즈히

[illegible]

— 10 —

----- . 다만, 동시조합
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경
비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
부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